[별지 제58호의4서식] <신설 2021. 10. 14.>

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 (대표자)	기관 또는 단체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

신청내용	교육명칭
	교육목적
	교육운영 장소
	홈페이지
	개설예정일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 (전화번호: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시설,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1부 2. 교육과정편성표(교육내용을 포함합니다) 및 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 접수 및 확인	→ 검토 · 심의	→ 결재	→ 지정서 작성	→ 교부
신청인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	처리기관 (국토교통부장관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